



내무부령(제629호)

내무부령(제629호)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소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94. 10. 27

내무부장관

소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검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방업무를 담당하게 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 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2. 영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하 “가스허가청”이라 한다.)

3. 영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거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등의 신청인의 성명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 대표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허가구분(신규 · 변경 · 증설등) 시공장소 · 착공 및 완공예정일
 3. 건축물,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면적 층수 및 용도면적
 4. 건축물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의 위치 · 구조 및 방화 · 폐난 등 안전시설의 설계도면
 5.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
 6. 건축물 ·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수
 7. 제5호의 소방시설설계업자의 등록증 및 소방시설을 설계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축사의 면허수첩 사본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영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허가청이 연면적 6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경보설비에 관한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하는 경우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대하여는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영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스허가청이 가스관계법에 의한 기술검토를 한 때에는 제2항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동의를 받은 기관이 그 허가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중 “소방검사의 검사자의 자격, 검사구분, 검사사항, 검사방법 및 횟수는 별표 1과 같다”를 “소방검사의 검사구분·검사사항·검사자의 자격·검사횟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3조의 2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조의 2(소방훈련 및 교육) ①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의 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소방서장은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2회의 범위내에서 소방훈련 및 교육의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

1. 연 4회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 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 나. 영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

2. 연 2회 실시하여야 하는 특수장소

- 가. 영 제6종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
-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

② 소방서장은 1급 방화관리대상물 및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에서 실시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중 연 1회이상은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관서와 협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실시사항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2년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 4조제1호증 “사람에 한한다”를 “사람중 소방시설관리사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5호증 “(선임신고에 한한다)”를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에 한한다)”로 한다.

2. 국가기술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3.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 및 제2항제5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 5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정신고의 경우에는 그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 전원이 여전한 공동방화관리규정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가 서명한 공동방화관리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6조제2항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물 및 공작물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정비
2. 계량 및 안전장치의 교체
3. 펌프설비의 정비
4. 환기·배출설비의 교체 또는 정비
5. 벨브 및 프レン지이음인 짧은 배관의 교체
6. 배수구·저유설비 또는 유분리시설의 정비
7. 불연성가스·수증기 및 불황성기체의 봉입장치 또는 탱크의 냉각장치 및 저온유지장치의 정비
8. 방유제를 해체하거나 용적의 감소 및 면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장비
9. 지하탱크 맨홀의 정비
10. 표지·개시판 및 바닥·선반의 정비
11. 고정주유설비 주유관의 교체 또는 정비
12. 주유취급소내 세차·급유 또는 간이정비시설의 정비 또는 제거

제1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 14조제1항의 표의 대표자 또는 임원란의 제2호를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능력란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

제 18조제3호 전단중 “제조소”를 “제조소등”으로 한다.

제 20조제2호증 “제17조제1호”를 “제17조”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 22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2조(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은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6월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 28조(소방시설의 적용기준) ① 영 제 29조제 4항제 5호의 규정의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지하구는 길이가 500미터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외의 경우로서 동일구내에 설치된 각 특수장소간을 연결하는 것은 50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영 제30조제 4항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창고시설을 말한다.

③ 영 제31조제 1항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상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이라 함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④ 영 제32조제 6항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하구”라 함은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의 것을 말한다.

⑤ 영 제33조제 1항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분”이라 함은 계단실,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분전반실, 목욕실, 화장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물탱크실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⑥ 영 제33조제 10항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옥내소화전설비,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및 연결살수설비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를 말한다.

⑦ 영 별표 1제 23항의 규정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폭 1.8미터이상, 높이 2미터이상 및 길이 50미터이상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이상).으로서 급배수관용의 것을 말한다.

제 29조제 1항제 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 2호(종전의 제1호) 및 제3호(종전의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그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

제 29조제 2항 전단중 “제 1항제 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 1항제 1호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점검한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내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봉인 또는 검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작동기능점검은 상반기에, 종합정밀점검은 하반기에 각각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 31조제 1항제 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및 자격수첩
제 33조제 1항의 표의 대표자 또는 임원란제 2호를 삭제하고, 동표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 2항증 “소방시설관리사수첩”을 “기술능력자의 자격수첩”으로 한다.

기술능력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2.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자격수첩

제 35조제 1항제 6호를 제8호로 하고, 동항제 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6호로 하며, 동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 2호(종전의 제1호)증 “취득한 사람으로서 5년이상”을 “취득한 후 3년이상”으로 하며, 동항제 3호(종전의 제2호)증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이상”을 “취득한 후 5년이상”으로 하고, 동항제 4호(종전의 제3호)증 “졸업한 사람으로서 7년이상”을 “졸업한 후 5년이상”으로 하며, 동항제 5호

(종전의 제4호) 중 “취득한 사람으로서 7년이상”을 “취득한 후 5년이상”으로 하고, 동항제6호(종전의 제5호) 중 “7년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8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설비기술사

2.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 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능력이 5년이상인 사람
3.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

④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실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2년내에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그 기간동안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시험

-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화재예방관리·건축물 소방안전기준·인원수용 및 피난계획) 및 화재분석(화재통계분석 및 국내외 주요화재사례 분석)
- 나. 소방유체역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
- 다. 소방법규(소방법·소방법시행령 및 소방법시행규칙)
-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 마.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2. 제2차 시험

-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사용법)
-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제37조(시험의 일부면제)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과목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을 면제한다.
2. 제3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과목중 소방안전관리론 및 소방법규와 제2차시험과목 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을 면제한다.

제38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3인(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5인)”을 “5인(제2차시험의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제40조제2항중 “기재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별지 제38호의2 서식의 경력·재직증명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재직증명원은 당해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할 수 있다.

④ 내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수집하게 하거나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단서중 “60점이상”을 “40점이상”으로, “70점이상”을 “60점이상”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관서의 게시판등에 공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42조 제목중 “부정행위자”를 “부정행위자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및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를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제44조제1항중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은 100미터이내, 주거지역은 120미터이내지”를 “공업지역·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은 100미터이내로”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내무부장관제2항제2호중 “제1호내지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3호·제53조제3항제2호·제61조제1항제1호·제62조제3항제3호 및 제63조제1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의 표의 대표자 또는 임원란·자본금 또는 자산액

란 및 소방설비기사란을 각각 아래와 같이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방시설공사업자와 합의하여 작성한 소방공사감리계획서 (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6조의2(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① 법 제61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를 하는 날 까지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공사업자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를 할 때에 별지 제64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시공신고서에 그 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수첩에 감리를 담당하는 특수장소의 명칭·소재지·감리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감리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제63호의3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감리를 맡게 된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63호의4서식의 소방공사감리자변경통보서에 의하여 종전의 공사감리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고 공사감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의 공사감리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제67조(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소방설비공사시공·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한 해당서류만을 첨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서 소방설비공사시공신고서 및 소방공사감리자변경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되, 소방설비공사시공신고서에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그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사본 2.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 3. 당해 소방설비공사를 시공관리하는 책임 공사감리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3급 소방공사 감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방설비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때에 한하며 자기수요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소요공사시공확인서 및 공정별시공내역서를 말한다) 5.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작성한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 다만, 건축허가 동의후 소방시설의 변경이 없거나 변경내용이 제68조 각호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책임 공사감리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3급 소방공사 감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별지 제63호의5서식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자가 당해 소	② 소방서장은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수첩에 소방설비공사를 하는 특수장소의 명

대 표 자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소방설비공사업면허증 및 면허수첩
자본금 또는 자산액 (소방설비공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1. 기업진단보고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2.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
소 방 설 비 기 사	1. 재직중인 소방설비기사의 연명부 2.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 3. 변경된 소방설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수첩

칭·소재지·시공하는 소방시설의 종류·공사기간·책임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이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내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제6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 68조 제목중 “범위”를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5개이하 중설 또는 정비”를 “정비 또는 5개 이하의 중설”로 하고, 동조제7호중 “회로가 10회로이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회로가 10회로이상”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10개이하의 중설 또는 정비”를 “정비 또는 10개 이하의 중설”로 하고, 동조제9호중 “전기화재정보기”를 “누전경보기”로 하며, 동조제10호중 “비상조명등의 10개이하의 설치 또는 정비와 유도표지의 설치”를 “비상조명등의 정비와 10개이하의 설치 및 유도표지의 설치”로 하고, 동조제13호중 “5개이하의 중설 또는 정비”를 “정비 또는 5개이하의 중설”로 한다.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40조의2 단서의 규정에서 “내부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 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는 때 또는 법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며, 동항 후단중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 또는 감리자”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소방설비공사업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에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의 소방시설도면을 첨부(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변경신고후 그 신고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동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의 공사 또는 정비의 완공검사신청은 건축주가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방시설도면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⑥ 소방서장은 별표 1제5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6호의2서식의 특수장소소방시설완공

확인표지를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69조의 2 및 제69조의3인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 69조의2(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장소) 영 제40조의3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장소는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으로 한다.

제 69조의3(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① 영 별표 6의 비고 제1호에서 “내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 중 소화설비작동용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영 별표 6의 비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가 공사 또는 정비할 수 있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은 비상전원·동력회로·제어회로·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전기신호에 의한 소화설비의 작동장치로 한다.

제6장의2(제69조의4 내지 제69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 69조의4(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① 법 제6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의3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신청서에 각각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및 자격수첩
2. 사무실의 평면축적도와 그 소유·전세 또는 임차관계 등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별표 7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비명세서(소방공사 감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신청이 영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의4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6호의5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

공사감리업등록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한 때와 법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무부장관은 공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고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69조의5(소방시설의 설계등) ① 법 제6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소방시설을 설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건축물의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그 건축물에 설치될 소방시설의 종류·위치 등 소방시설의 설계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의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설계업소명(법 제61조의2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명을 말한다.)
2. 소방시설설계업소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
3.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책임기술자(소방시설설계업자의 경우에는 영 별표 7제1호의 규정의 의한 주된기술인력자를, 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소방설비기술자 또는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를 말한다)의 소속부서명·이름 및 서명

제 69조의6(위반사항의 보고등) ① 법 제65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서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관계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자(그 공사의 도급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구두로 통보하고 이를 3일이내에 시정하지아니한 경우에는 제66호의6서식의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시정통보서에 위반사항과 시정기간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기간내에 시정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6호의7서식의 소방시설공사위반사항발견보고서에 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9조의7(감리결과의 통보등) ① 법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66호의8서식의 소방공사감리결과통보서에 의하여 그 특수장소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그 특수장소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감리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66호의9서식의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소방서장에게 공사가 완료된날부터 각각 7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리결과통보서 및 감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사본
2. 당해 소방설비공사를 감리한 책임 공사감리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건축사면허증 사본
3.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된 때의 그 시설도면(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신고 및 변경신고후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자(법 제6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을 포함한다)가 작성하고 소방시설공사업자 및 특수장소의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이 확인한 별지 제66호의10서식의 소방공사감리일지

5.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③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66호의11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기록부 및 별지 제66호의12서식의 소방공사감리대장에 설계 또는 감리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10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 69조의8(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법 제6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일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66호의13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폐업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 첨부)를 시·도지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서 그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록을 받은 사람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파산관재인
2. 등록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3. 등록을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인
4. 그밖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이었던 사람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사람

제 69조의9(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

증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66호의 14서식의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이의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은 때 다만, 등록증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때
3. 제6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때

제 69조의10(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2급·3급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범위) 영 별표 7제1호 및 제2호의 영업범위란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것을 말한다.

제 69조의11(2급·3급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 영 별표 7제1호 및 제2호의 비교에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 69조12(감리기간) 영 별표 8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방시설의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감리할 필요가 있는 기간으로서 소방시설의 종류별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8장에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2조의2(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사를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지리조사 : 간선 또는 지선도로의 폭과 거리·교통의상황·토지의 고저·건축물의 개황 그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의 조사

2. 소방용수조사 :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제 8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영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영 제9조제2항제5호의 규정의 의한 2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제17조제1호·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무에 관한 강습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실시

한다.

④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강습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0호의2서식의 1급 방화관리업무·2급 방화관리업무·위험물취급업무·소방시설점검업무 강습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3조 제1항중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을 “강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강습의 종류별로”, “강습원서에 사진(가로 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을 “1급 방화관리업무·2급 방화관리업무·위험물취급업무·소방시설점검업무강습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방화관리업무”를 각각 “2급 방화관리업무”로,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업무를”를 각각 “위험물취급업무”로 하며, 동조제3항중 “별지 제72호서식의 수강증”을 “수강증”으로 한다.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5조의2(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등) ① 영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이 그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습을 수료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연도의 말일까지 내무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내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그 강습의 수료를 무효로 한다.

② 내무부장관은 영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장소·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2호서식의 1급 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 과목은 별표 13에 의한 1급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과 같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⑦ 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⑧ 내무부장관은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장으로 하여금 하게 한다.

제 8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3시간이상”을 “3시간이상(별표 13의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일부 강습과목을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시간이상)”으로 한다.

⑨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8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소방시설점검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첩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각각 자격 종별 및 등급에 따라 별지 제73호서식의 1급 방화관리자수첩·2급 방화관리자수첩, 별지 제74호서식의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소방시설점검원수첩을 교부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시설점검원수첩교부·재교부대장을 수첩종별로 작성하여 그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제2항제6호내지제12호, 제17조제2호, 제22조제3호 또는 별표 4의 비고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1급 방화관리자·2급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소방시설점검원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매를 첨부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장에게 수첩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경력증명서(영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제2항제8호 내지 제12호, 제17조제2호, 제22조제3호 및 별표 4의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2. 졸업증명서(영 제9조제1항제6호·제7호·제2항제6호·제7호 및 별표 4의 비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90조 및 제9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0조(교육수료사항의 기재등)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그 자격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수첩등에 교육수료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보조기술인력증전문대학(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소방안

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건축허가·동의업무·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업무 또는 소방검사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92조(실무교육수료자 명부)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별지 제79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명부를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위험물시설안전원·소방시설점검원별로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93조제8항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이를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0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 4만원
2.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증의 재교부 : 1만원

⑦ 법 제6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설계 및 감리수수료는 감리의 종류·규모 및 기간등을 고려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95조제1항중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영수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영수증”을 “과태료납부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증, 과태료영수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서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제1항의 과태료납부영수증 및 과태료영수필통지서”를 “과태료영수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서”로 하며, 동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이 영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0호의2서식의 소방법규위반과태료부과처분에고서에 의한다.

⑨ 그밖의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 97조중 “법 제49조 및 법 제58조”를 “법 제49조·법 제58조 및 법 제65조의9”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능력 : 위험물취급기능사 1인 및 비파괴검사기술사 1인이상(또는 비파괴시험의 종목별 시험기사 각각 1인이상) 별표 4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하단에 비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능력

- 가. 소방시설관리사 1인이상
- 나. 소방시설점검보조자 4인이상

비 고

소방시설점검보조자라 함은 다음 각호중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3.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

별표 5의 제목중 “시험위원회위원”을 “시험위원등”으로 하고, 동표의 제4호중 “소방정”을 “소방령”으로 하며, 동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시설관리사

별표 6의 비교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하식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맨홀뚜껑은 지름 1,296mm

이상의 것으로 하되, 그 뚜껑에는 “소화전 · 주차금지” 또는 “저수조 · 주차금지”의 표시를 하고 뚜껑부근에는 황색반사도료로 폭 15cm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도색하여야 한다.

별표 7의 구분란의 정보기구란중 “자동화재탐지기(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음향장치)자동소화설비제어반”을 “감지기 · 수신기 · 중계기 · 음향장치 · 자동소화설비제어반”으로, “가스누설탐지기”를 “가스누설경보기”로, “자동화재속보기”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로, “축전지설비”를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로 하고, 동표동란의 기타 소방용기계 · 기구란중 “소방펌프자동차 · 소방펌프(이동용 소방펌프를 포함한다)”를 “소방펌프자동차 · 소방펌프”로, “소방용호스”를 “소방호스”로 하고, 동란의 기타 소방용기계 · 기구란중 “자동소화기(유수검지장치 · 압력검지장치 · 일제개방밸브 · 음향장치 · 스프링클러헤드 · 물분무헤드 · 포헤드 · 분말헤드 및 살수헤드) · 압력챔버 · 가스관선택밸브”란을 삭제하며, 동표 동란의 경보기구란과 기타 소방용기계 · 기구란의 사이에 자동소화기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의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동 소화 기기	유수검지장치 · 압력검지장치 · 일제개방밸브 · 음향장치 · 스프링클러헤드 · 물분무헤드 · 포헤드 · 분말헤드 · 살수헤드 · 압력챔버 · 가스관선택밸브	400	100	
----------------	---	-----	-----	--

나. 시험기기 및 규격

번호	시 험 기 기 명	규 격
1	전자저울	$1 \times 10^5 \sim 1.6 \times 10^7$ g
2	PH미터	0 ~ 14HP
3	항온항습도	0 ~ 100°C ± 0.3°C
4	저온조	-70°C이상
5	진동시험기	5 ~ 3, 600cpm
6	조도계	0 ~ 3×10^3 lx이상(최소눈금 : 0.1x이하)
7	절연내력계	AC 0 ~ 3×10^3 V, 0.5KVA
8	교류전압전류계	0.5급
9	직류전압전류계	0.5급
10	지시온도계	0 ~ 150°C
11	항온조	-28°C ~ 130°C, -80°C ~ 10°C
12	자동비중계	고체측정범위 : $5 \times 10^{-3} \sim 1.2 \times 10^2$ 액체측정범위 : $1 : 10^{-4} \sim 5 \times 10$

13	원심분리기	$0 \sim 5.2 \times 10^3 \text{ rpm}$
14	소화시험대	A급(1, 2단위), B급(0.5, 1, 2, 3, 4, 5, 6, 7, 8, 9, 10, 12, 14, 16, 18, 20 단위)
15	방출포량시험기	70 l
16	진공계	직경 200mm(0 ~ 760mmAq)
17	기밀시험기	자동온도조절, 일정수위조절
18	염수분무시험기	5%염도 35°C
19	내압시험기	수압 300kgf/cm ² , 보호망부착
20	플라니미터	연소시험(45도 경사법시험기)
21	연소시험기	cps
22	점도계	한계산소지수측정기(정밀도 ± 0.05%)
23	한계산소지수측정기	20 ~ 150kgf/cm ² , 0 ~ 200kgf
24	종봉압축시험기	0 ~ 30g, 0 ~ 1kg, 0 ~ 50kg
25	점점압력계	9kW(20 ~ 80V)
26	계단상승시험기	6kW(10 ~ 90V)
27	직선상승시험기	40 ~ 150°C ± 0.5°C, 0 ~ 200cm/s
28	전온식감지기시험기	500°C ± 2°C자동표시, 0 ~ 1.5m/s
29	순환식연기감지기시험기	0 ~ 10m/s(±10%), 0 ~ 15min
30	이온화식비화재보시험기	$10^3 \sim 3 \times 10$ 루스 0 ~ 15분
31	광적식비화재보시험기	SV ₅ 형
32	정정기측정기	SH형
33	정전기제거기	10 ³ 회, 실온 ~ 150°C ± 2°C, 20A
34	차동식감지기반복시험기	0 ~ 300A, 0 ~ 300V
35	경계전로용부하	수압 : 50kgf/cm ² , 유압 : 150kgf/cm ²
36	결합금속구수압시험장치	50kgf/cm ² , 20m시험대부착
37	소방호스시험장치	$2 \times 10^4 \text{ rpm}$
38	회전속도계	500g이상(측정범위 999mm)
39	고무인장강도시험기	0.1 ~ 100H
40	고무경도시험기	폭 1m이상, DC 0 ~ 50V, 5A, 120dB이상
41	음량장치시험기	$10^{-4} \sim 1.9 \times 10^6 \text{ cd/m}^2$
42	휘도계	측정범위 : $1 \times 10^{-2} \sim 5 \times 10^2 \text{ mN/m}$
43	표면장력계	$0 \sim 10^3 \text{ kgf/cm}^2$
44	가압용기내압시험기	30t이상(최소눈금 10g)
45	만능재료시험기	측정범위 : $1.5 \times 10^2 \sim 8 \times 10^2$
46	유도결합프라즈방출분광분석기	전도도검출범위 : $5 \times 10^{-4} \sim 2 \times 10^2 \mu\text{s}$
47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침투범위 : 0 ~ 62mm(최소범위 : 0.1mm)
48	펜니트로미터	$0 \sim 250 \text{ pphm}$
49	오존농도시험기	$1.3 \times 10^{-2} \times 3.8 \times 10^2 \text{ mm}$
50	초음파두께측정기	진공유량 : 0 ~ 300 l/min
51	공기호흡기작동성능시험기	진공도 : 300mmH ₂ O이상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9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의 취급소설치허가란나목중 “석유판매취급

소 및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를 “석유판매취급소 ·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및 이동판매취급소”로 하고, 동표 동란의 충수시험란가목중 “50만리터미만”을 “50만리터이하”로 하며, 동란나목

중 “50만리터이상 100만리터미만”을 “50만리터초과 100만리터이하”로 하며, 동란다목중 “100만리터이상”을 “100만리터초

과”로 하며, 동표의 구분란의 수입시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입 시 험	가. 최대저장량 1만리터이하 나. 최대저장량 1만리터초과 2만리터 이하 다. 최대저장량 2만리터초과	1만원 2만원 2만원에 1만리터당 3천원씩 가산한다.
---------	---	--

별표 15의 제7호 내지 제14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6호로 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7호로 하며, 동표에 제2호·제8호·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비교증 “제1호 내지 제14호”를 “제1 내지 제18호”로 한다.

1. 공동방화관리규정신고 테만(법 제10조제2항)
 - 30일미만: 30만원
 - 30일이상: 50만원
2. 소방용수시설의 변경·폐지신고 테만(법 제43조제2항)
 - 30일미만: 30만원
 - 30일이상: 50만원
3. 소방시설설계업자의 건축사와의 협의 테만(법 제65조의 4 제2항): 50만원

4. 화재경계지구의 소방검사·소방훈련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 소방용수·소화기구등의 설치명령 위반(법 제69조 제2항): 50만원

별표 16의 제1호가목중 “2이상일때”를 “동시에 2이상 발생한 때”로 하고, 동호나목 내지 라목을 각각 다목 내지 마목으로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의 제2호에 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바.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의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 차	2 차	3 차
(1) 법 제65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법 제65조의 9	시정명령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2) 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65조의3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 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5조의 9	등록취소		
(3)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법 제65조의 9	등록취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법 제65조의 9	등록취소		
(5)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법 제65조의 9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65조의 9	등록취소		
(7)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치거나 재산피해를 끼친 때	법 제65조의 9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8) 그밖의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65조의 9	시정명령	영업정지 3 월	등록취소

비 고

- (1) 제1호다목 및 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2년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가. 시정명령처분이 3회 있은 후 시정명령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시정명령처분이 2회 또는 영업정지처분이 1회 있은 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제1호다목·위표 및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또는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 시정명령처분이 5회 있은 후 시정명령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나. 시정명령처분이 3회, 영업정지처분이 1회 있은 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다. 영업정지처분이 2회 있은 후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때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계인란중 “④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방화관리등급 1급 2급

구비서류 : 공동방화관리규정(제정신고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관리의 권원이 있는 사람 전원이 서명한 것,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한하여 공동방화관리협의회 대표자가 서명한 것이어야 함) 1부.

별지 제4호서식중 제5항내지 제17항을 각각 제7항내지 제19항으로 하고, 동서식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중 제10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하단에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시설

⑩소방시설

* 작성요령

- 제조소등의 구분 : 소방법시행령 제14조·제15조 각목 및 각호에서 구분하는 제조소등의 종류를 기재
- 저장시설 : 소방법시행령 제16조 각호에서 구분하는 저장시설의 종류를 기재

별제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중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위치·구조 및 설비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갑지)(앞면)의 주소와 차고지위치의 사이에 설치목적을 삽입하고, 동서식의 (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동탱크저장시설비치용

(을지)

1. 원형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시설허가 및 소방검사증	
허가번호	
품명·수량	
차량번호	
허가년월일	
설치목적	
소방검사연월일	
유효기간	

2. 마름모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시설허가 및 소방검사증	
허가번호	
품명·수량	
차량번호	
허가년월일	
설치목적	
소방검사연월일	
유효기간	

* 이 필증은 운전석 좌측 전면 상단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 이 필증은 운전석 좌측 전면 상단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비 고

1. 지질은 모조지 $120\text{g}/\text{m}^3$ 인 것으로 하고 자동차의 유리면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콘테이너방식의 이동탱크의 경우에는 알루미늄제의 것으로 하고 탱크 뒷면 경판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바탕색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색상으로, “위험물”은 적색글자로 하고 기타 글자는 흑색으로 한다.
3. 기재사항은 사무실비처용의 허가증과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비고란중 “간이탱크”를 ‘난방용탱크’로 하

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탱크제원란중 “밀밸브손상방지방법”을 “배출밸브손상방지방법”으로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중 “각지장치”를 “자동계량장치”로, “급유구의위치”를 “주입구의위치”로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탱크설구조의개소”를 “탱크설구조의 개요”로, “배급”을 “배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대표자 또는 임원란 제2호를 삭제하고, 동란의 기술능력란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하단에 기재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국가기술자격수첩

* 기재요령

-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성명과 본적을 기재

별지제2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제2호중 “제17조제1호”를 제17조”로 하고, 동란제3호를 삭제한다.

항으로 하고, 동서식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중 “취급주입”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5항내지 제9항을 각각 제6항내지 제10

④ 운반일시	⑤ 운반수량	리터
--------	--------	----

별지 제34호서식의 제6항내지 제9항을 제7항내지 제10항으로 하고, 동서식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의 구

비서류란제1호를 삭제하고, 동란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대표자 및 임원	성명	본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및 자격수첩

삭제하고, 동란의 기술능력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서식의 구

별지 제36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대표자 또는 임원란제2호를

비서류란 하단에 기재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술능력	1.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의 연명부 1부 2. 변경된 기술능력자의 자격수첩
------	---

※ 기재요령

-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⑦임원”란에 성명과 본적을 기재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진란중 “(가로 7cm × 세로 5cm)”를 “(가로 5cm × 세로 7cm)”로 하고, 별지 제40호서식의 (제2면)의 사진란중 “(5cm × 4cm)”를 “(가로 3.5cm × 세로 4.5cm)”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 · 별지 제46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8호서식의 상속인란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제13항 및 제14항으로 하며, 동란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제3호를 삭제한다.

⑫ 본적

별지 제50호서식의 구비서류란제2호를 삭제하고,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하단에 기재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2호서식 ·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기재요령

-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성명과 본적을 기재

별지 제58호서식의 상속인란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고, 동란에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서식의 구비서류란제3호를 삭제한다.

(13) 본 적

별지 제5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대표자 또는 임원”을 “대표자”로 하고, 동란의 대표자란(종전의 대표자 또는 임원란) 제2호를 삭제하며, 동서식의 구비서류란 하단에 기재요령란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란의 자본금 또는 자산액란제2호 및 소방설비기사란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인 한다.

※ 기재요령

- 변경내용 : 변경된 내용이 대표자 또는 임원인 경우 성명과 본적을 기재

소방설비공사업면허수첩

별지 제63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64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66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63호의1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지 제71호서식 내지 별지 제7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76

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7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8호서식의(제1면)의 사진란중 “(가로 5cm × 세로 4cm)”를 “(가로 3.5cm × 세로 4.5cm)”로 하고, 동서식의(제1면)의 주소란 아래에 “수료증취득구분”을 신설하며, 동서식의(제1면)의 하단에 작성요령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작성요령

- 수료증취득구분 :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또는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여 기재

(5) 교육기간

별지 제79호서식의 우측상단에 “실무교육종별 : 등급”을 신설하고, 동서식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제5호 · 제6호, 제66조의2, 제67조제1항 · 제2항, 제69조의2 내지 제69조의8, 제93조제6항 · 제9항, 별표9의비고 제2호, 별표 9의2 및 별표 16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1994년 12월 28일부터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소방시설관리사에 의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경

과조치) 1996년 6월 30일까지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만제곱미터”는 “1만5천제곱미터”로 본다

제 3조(소방시설관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본다

제 4조(소방시설점검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방시설점검업자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5조(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에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6조(소방공사감리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12월 27 일전에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시공 신고를 한 경우에는 1995년 1월 31일까지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1995년 4월 30일까지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거나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위험물시설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자에 대한 경

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 안전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험물취급업무에 관한 강습을 수료한 사람으로 본다.

제 8조(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5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본다.

제 9조(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 10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별표 및 별지생략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도란?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등급(고효율) ~ 5등급(저효율)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형의 효율높은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 제조업체에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원천적인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너지절약

등급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대상품목		표시방법
품명	범위	
전기냉장고	정격소비전력 500W이하이고 유효내용적 1,000ℓ 이하	제품의 전면
조명 백열전구	소비전력 30W형, 60W형, 100W형	포장물 및 개별포장물
광광램프 형광램프	직관형 : 20W형, 40W형 환형 : 30W형	
기기 안정기	직관형 : 20W형, 40W형 환형 : 32W형	제품의 윗면
전기냉방기	정격냉방능력 9,000kcal/h 이하	제품의 전면

등급표시 제도 시행으로 얻는 효과는?

- 고효율 기기 및 고연비 승용차의 보급확대 및 기술개발 촉진
- 고효율기기 보급확대로 발전소 건설비용 및 연료비 절약
 - 1등급과 낮은 등급 제품간에는 30~40%의 에너지 비용 절감
 - 냉장고, 에어콘, 조명기기의 효율이 목표효율에 도달할 경우 연간 약 1,370억원의 소비자 전기료 절감 가능
 - 승용차의 연비 1% 향상시 약 310억원의 유류비 절감